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2022회계년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 감사결과 1부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감 사 이 성 화

감 사 김 원 태

이성화 (서명)

김원태 (서명)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법인 사무국장

성 명 정 휘 진 (서명)

정휘진 (서명)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의 2022회계년도 교비회계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교비회계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 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 감사결과 1부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감 사 이 성 화
감 사 김 원 태

이성화
(서명)
김원태
(서명)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관리처장
성 명 김 중 완

김중완
(서명)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한국성서대학교)의 2022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경우 내용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1	140,430원		교비회계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지방세)학교회계 전출지연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없음
계				

- 붙임 : 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한국성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감 사 이 성 화
감 사 김 원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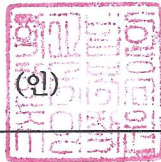
이성화
김원태

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 중 원

2023년 4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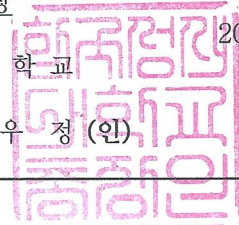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강 우 정 (인)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2년 3 월 1 일부터 2023년 2 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법인일반업무]</p> <p>1. 교비회계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 학교회계 전출지연</p>	<p>1. 「교비회계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 학교회계 전출지연」 부분은 해당구청의 업무착오와 학교법인의 업무처리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사안 자체가 소액의 지방세 환급분(140,430원)이 학교회계로의 전출이 지연처리 되어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업무 절차상 확인작업이 늦게 이루어져 전출이 지연된 것임.</p> <p>아울러, 결산처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보완이 이루어진것으로 향후 이러한 업무착오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조치 하였음.</p>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종원 직인

